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. 6. 17 선고 2016가단713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가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기독교대한감리회C교회

피고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6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4. 4. 12. 접수 제876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이금진

별지